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119
결재일자	2016.1.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구청장 방침 제48호

★주무관	동행정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관리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이수진	이동재	강호철	고재식	김경호	01/15 김기동
협 조					

지역경찰관서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행 정 관 리 국

(자 치 행 정 과)

지역경찰관서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관내 지역 경찰관서의 동청사 무상사용 허가기간이 2016. 2. 28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여 **범죄 예방활동** 및 **지역 치안유지**를 위한 **공공사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I

추진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
-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항 1호 :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II

사용 현황

무상 사용현황

○ 시설별 사용현황

연번	시설명	소재지	사용용도	사용면적
1	중곡2동청사	능동로 346	중곡2파출소	건물 일부(142.54㎡) 1층 77.5㎡/2층 65.04㎡
2	중곡3동청사	동일로76가길 28	중곡3파출소	건물 일부(123.2㎡) 1층 123.2㎡
3	자양2동청사	자양로3가길 26	자양2치안센터	건물 전체(205.87㎡) 1층 74.7㎡/2층 66.07㎡/3층 65.1㎡
4	화양동청사	능동로17길 39	화양지구대	건물 일부(284.93㎡) 지하1층 158.61㎡/1층 126.32㎡

○ 사용허가 기간 : 3년 (2013. 3. 1 ~ 2016. 2. 28)

- 자양2치안센터(자양2동 청사)는 당시 사용허가대상에서 제외되어 사용 허가 없이 사용중임

자양2치안센터 (자양2동 주민센터)

- 동청사 부지내 별동의 건물로, 파출소 용도로 건립됨
- 2~3층은 공실 상태로 2013년 무상사용 허가 검토시 타부서의 공실 사용

계획으로 사용허가에서 보류되었으나 현재 사용계획 없음

- **자양1파출소 신축공사 기간동안 임시청사로 사용**하다 신 청사 건립 후 자양2치안센터로 환원 예정

III

무상사용 허가개요

허가대상 : 증곡2파출소 외 3개소

연번	시 설 명	소 재 지	사용용도	사 용 면 적
1	증곡2동청사	능동로 346	증곡2파출소	건물 일부(142.54㎡) 1층 77.5㎡/2층 65.04㎡
2	증곡3동청사	동일로76가길 28	증곡3파출소	건물 일부(123.2㎡) 1층 123.2㎡
3	자양2동청사	자양로3가길 26	자양2치안센터	건물 전체(205.87㎡) 1층 74.7㎡/2층 66.07㎡/3층 65.1㎡
4	화양동청사	능동로17길 39	화양지구대	건물 일부(284.93㎡) 지하1층 158.61㎡/1층 126.32㎡

허가기간 : 2016. 3. 1 ~ 2019. 2. 28 (3년)

추진배경 : 무상사용 허가기간 만료 및 자양1파출사 임시청사 사용 요청

사용용도 : 범죄예방활동 및 지역치안유지를 위한 지역경찰관서

사 용 자 : 서울광진경찰서장(반기수)

사용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4조

허가조건

- 광진구 행정목적으로 반환 요구시 즉시 반환
- 공유재산의 시설보수 및 기타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 사용자 부담

허가취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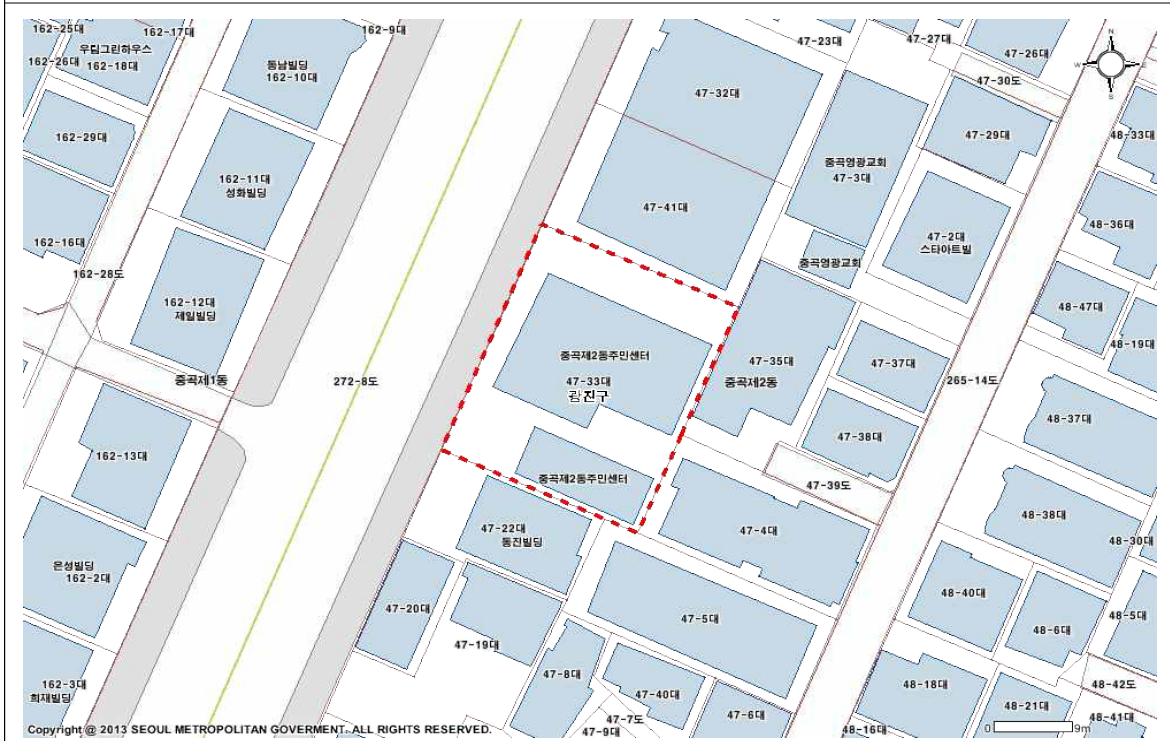
- 허가서상 사용인의 의무 및 허가조건 미이행 시
- 광진구가 직접 행정목적 수행 및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발생시

- 붙임 1. 지역경찰관서 사용현황(위치도 및 전경사진) 각 1부.
2.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서 1부.
3. 허가조건 1부.
4. 사용허가 신청서 1부. 끝.

지역경찰관서 사용 현황

■ 중곡2파출소

위 치 도



전 경 사 진



■ 중곡3치안센터

위 치 도



전 경 사 진



자양2치안센터

위 치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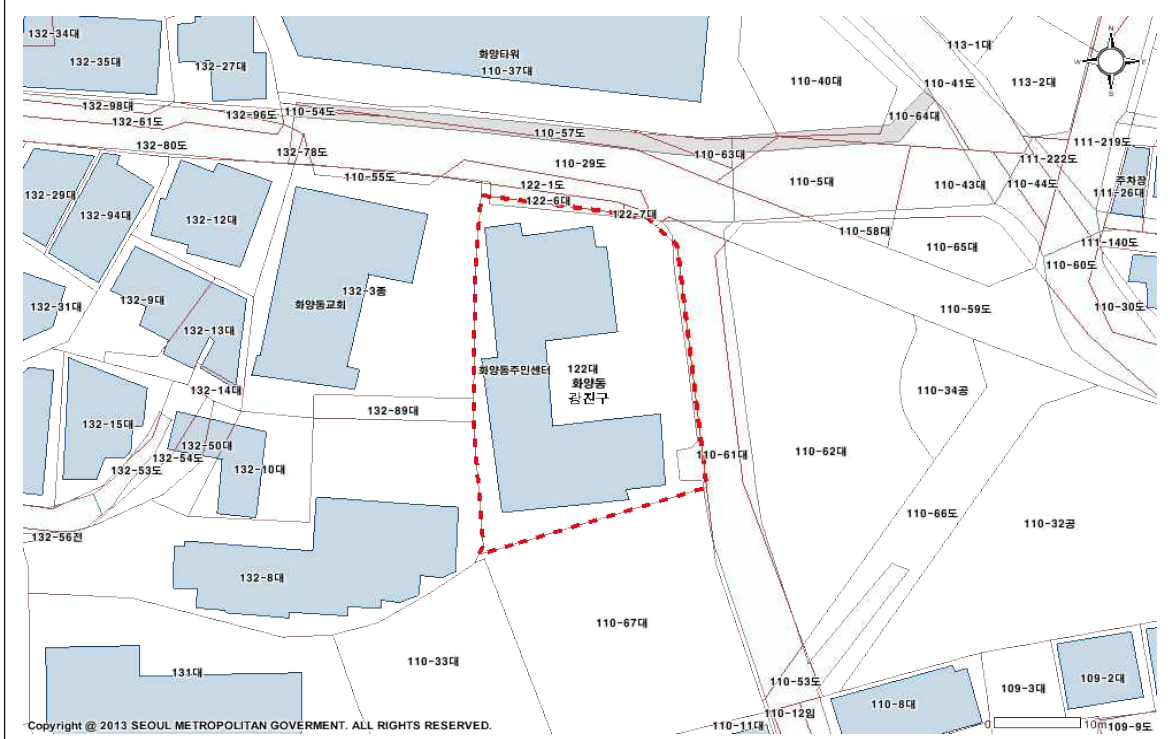


전 경 사 진



화양지구대

위 치 도



전 경 사 진





구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서

1. 재산의 표시

소재지	시설명	사용허가면적	비고
능동로 346 (중곡2동)	중곡 2 파출소	건물 일부(142.54㎡) 1층 77.5㎡/2층 65.04㎡	
동일로76가길 28 (중곡3동)	중곡 3 파출소	건물 일부(123.2㎡) 1층 123.2㎡	
자양로3가길 26 (자양2동)	자양2치안센터	건물 전체(205.87㎡) 1층 74.7㎡/2층 66.07㎡/3층 65.1㎡	* 자양1파출소 임시 청사
능동로17길 39 (화양동)	화양지구대	건물 일부(284.93㎡) 지하1층 158.61㎡/1층 126.32㎡	

2. 신청인

가.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47(능동)

나. 성명 : 서울광진경찰서장 반기수

3. 사용기간 : 2016. 3. 1. ~ 2019. 2. 28.

4. 위 표시재산의 무상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별지의 허가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2016년 2월 일

광진구청장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치안을 위한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 등 공용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2조(사용허가 기간) ①사용허가 기간은 2016년 3월 1일로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②사용허가 재산을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허가갱신 신청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무상으로 한다. 단, 광진구의 재정·행정 목적에 따라 사용료의 징수가 필요한 경우, 사용자와 그에 따른 협의를 실시하여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4조(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손해보험계약(영업배상책임보험)과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의 사본을 광진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①사용인은 선량한 재산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며, 무상사용 허가 재산에 대하여 보존·관리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당해 허가재산에 대하여 권리금 또는 아무런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6조(사용허가 재산의 유지관리비 및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의 시설보수 및 기타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와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모든 공과금 및 부담금을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7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구청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업종)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자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사용자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사용자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청사, 구유재산 건축물 등 광진구가 직접 사무용·사업용에 필요한 때
2. 도로, 공원, 하천, 제방, 우수지, 구거 등 공공용 사업에 필요한 때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때
4. 허가 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5. 허가 받은 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6. 기타 구청장이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9조(사용허가 취소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광진구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이 허가취소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1개월 전에 사용자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 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광진구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광진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의무 불이행시의 사용료 징수) 사용인이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광진구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광진구가 원상복구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기간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위반하여 광진구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 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공공·공익 또는 재산관리상의 목적에 의하여 광진구가 필요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응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사항)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 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광진구의 결정에 따른다.

[별지 제18호 서식]

사용허가 신청서

○ 재산의 표시

연번	시 설 명	소 재 지	사 용 면 적	비고
1	화양지구대	능동로17길 39 (화양동)	건물 일부(284.93㎡) 지하1층 158.61㎡/1층 126.32㎡	
2	중곡2파출소	능동로 346 (중곡2동)	건물 일부(142.54㎡) 1층 77.5㎡/2층 65.04㎡	
3	중곡3파출소	동일로76가길 28 (중곡3동)	건물 일부(123.2㎡) 1층 123.2㎡	
4	자양2치안센터	자양로3가길 26 (자양2동)	건물 전체(205.87㎡) 1층 74.7㎡/2층 66.07㎡/3층 65.1㎡	

○ 대부(사용)기간 : 2016. 3. 1. ~ 2019. 2. 28. (3년간)

○ 대부(사용)목적 : 범죄예방활동 등 지역치안유지를 위한 공공청사.

○ 대부(사용)료 : 무 상

○ 대부(사용)조건 : 귀 구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15년 12월 14일

신청인 주소

성명 : 서울광진경찰서장

사업자등록번호 : 207-83-00190

전화번호 : 02)458-9939



광진구청장 귀하